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가사근로자법 시행령)



[시행 2022. 6. 16.] [대통령령 제32659호, 2022. 5. 31., 제정]

고용노동부 (고용문화개선정책과) 044-202-7467

- 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)** ①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제2호에서 "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 - 1.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
 - 2. 가사근로자(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)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
 - 가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
 - 나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
 - 다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
 - 3. 가사근로자에게「최저임금법」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
 -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. 다만,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.
 - 2.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. 다만,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다.
 - 3.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. 다만,「직업안정법」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 - 4. 「직업안정법」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 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
- 제3조(범죄경력조회)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
 - 2.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
 - ②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・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・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시・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.
 - 1.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
 - 2.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
 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야 한다.
- **제4조(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)**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
- 2.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
- 3.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
- **제5조(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)**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"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
 - 2.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- **제6조(경영상 불가피한 경우)**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(이하 이 조에서 "기준달"이라 한다)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
 - 가.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
 - 나.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
 - 다.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
 - 2.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 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
- 제7조(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)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임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**제8조(고용보험료 등의 지원)**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, 지원 수준, 지원 기간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이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
- 제9조(권한의 위임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
 - 1.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, 인증 신청 접수, 인증 심사, 인증 결과 통지·공시,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접수
 - 2. 법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의 접수
 - 3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 요구
 - 4.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・검사・질문 및 보고・자료제출 명령
 - 5.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, 인증 취소,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 부여 및 청문
 - 6.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・징수(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・징수는 제외한다)
- 제10조(업무의 위탁)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.
 - 1.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 - 2. 연금보험료 지원 업무: 「국민연금법」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
 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·운영 업무를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민간연구기관(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)
- 3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•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- 제1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고용노동부장관(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)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- 1.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,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 - 3.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 - 4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
 - 가.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
 - 나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
 - 다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부칙 <제32659호,2022. 5. 31.>

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